# 식품의약품안전처

국민 **안심이 기준입니다** 10년 지켜온 국민안성, 100년 토역갈 안십기준

##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 시험·검사기관 의뢰 안내

#### □ 배경
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시행규칙 제30조 [별표9] 제3호 가목 1). (총리령 제1885호, '23.6.9. 공포) 개정·시행 관련 시행 일자 및 내용 안내
- ⇒ (내용) 수입식품 등 등급별 정밀검사 대상[참규]은 **민간 시험·검사기관**에서 **검사**
- \* 최초 수입, 부적합 제품(5회), 기준규격 신설·강화 제품, 특별관리영업자 수입제품 등
- □ 시행 일자 : 2023년 12월 10일부터 (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)
- □ 개정 사항

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에 대해 <u>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</u> 기 또는 <u>민간 시험·검사기관</u>\* 중에 선택하여 검사의뢰 가능

\* [식품 전문시험·검사기관] ① 한국식품과학연구원, ② 한국식품과학연구원(부산지소), ③ ㈜한국분석기술연구원, ④ 한국기능식품연구원, ⑤ 한국에스지에스(주) 〈지정번호 순〉



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(수익자부담원칙)하는 정밀검사에 대해 <mark>민간시험</mark>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가능

\* 다만,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(마약이나, 검사장비 및 시약 등이 없는 경우) 지방식약청에 의뢰 가능

#### □ 참고 사항

- ㅇ 지방식약청(시험분석센터 등) 수행 업무
- 수입식품의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른 본부지시 검사나 무작위 표본검사
- \* 이 경우도 **방사능 및 마약류 검사를 제외**한 <u>그 외 검사는 영업자가 민간기관 선택 가능</u>
- 그 외 국내 식품·의약품·화장품·의약외품 등 검사와 연구사업 등 수행
- ★ [붙임] 민간시험·검사기관 활용 확대 관련 업무 처리 지침(Q&A)

## 붙임

#### 민간 시험·검사기관 활용 확대 관련 업무 처리 지침(Q&A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개정·시행으로 영업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의 민간 시험·검사기관 활용 확대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지침(Q&A)를 알려드립니다.

#### Q 1.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사유는 무엇인가요?
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3조(책무)에 의거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,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의무가 있으므로
-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입 영업자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정밀검사는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, 정부는 위해 우려 품목 또는 감시(모니터링)검사 등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, 동 내용은 모든 수입식품등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.
- \*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30조 [별표9] 제3호 가목1) → 개정 ·공포('23.6.9) → 시행('23.12.10, 수입신고일 기준)

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## Q 2. 민간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의뢰하여야 하는 정밀검사는?

-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\*는 원칙적으로 민간 시험·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, 정밀검사 대상은 아래 1~3등급 수입 식품등이 해당됩니다.
  - \* 최초 수입 제품, 부적합 재수입 제품(5회), 기준규격 신설·강화 제품, 특별 관리영업자 수입 제품 등

#### ▶ 민간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의뢰해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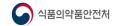
구 분	세부 내용
1등급 수입식품등	1)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2)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·강화된 수입식품등 3)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'하였거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*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확인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5년을 계산함
2등급 수입식품등	1) 법 제21조(수입검사)에 따른 정밀검사,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 25조(출입·검사·수거)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
3등급 수입식품등	1) 특별관리영업자'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* 관련: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1항제3호 2)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'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 제조업소(수출업소 또는 해외작업장)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* 관련: 「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제13조의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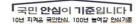
#### Q 3. 검사의뢰가 가능한 민간 시험·검사기관은?

-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민간 시험·검사기관은 「식품·의약품 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전문 시험·검사기관이며, 아래 5개 기관으로 의뢰 가능합니다.
  - 다만,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(마약이나, 검사장비 및 시약 등이 없는 경우) 지방식약청에 의뢰 가능합니다.

#### ▶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(5개 기관)

연번	기관명	소재지	전화	시험검사항목
1	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	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(포일동)	02-3470-8200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, 식품조사처리확인, 방사능
2	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원	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(대연동)	051-628-7915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
3	㈜한국분석기술 연구원	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67 해광빌딩(초량동)	051-466-1231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
4	(사)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번지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A-B03호, B101~102호, B301~302호	031-628-2400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방사능, 유전자변형식품, 식품조사처리확인
5	한국에스지에스㈜	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, 301호, 302호, 303호, 304호, 305호	031-689-8612~7	이화학, 미생물, 잔류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, 방사능





# Q 4.

# 상기 Q3에서 말하는 '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'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?

○ <sup>®</sup>마약류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및 방사능 검사와 <sup>®</sup>민간 시험·검사 기관 전부 또는 일부가 검사장비 및 시약 등의 문제로 검사항목 전체 또는 일부 검사가 불가한 경우를 말하며, 민간 시험·검사기관 검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분·관리합니다.

검사 수행 여부 구분	검사의뢰 기관
✓ 품목별 검사항목이 5개 모든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가 불가한 경우	• 지방청 시험분석센터
✓ 품목별 검사항목이 4개 이상의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경우	• 민간 검사기관
✓ 품목별 검사항목이 3개 이하의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한 경우	• 검사기관 영업자 선택 가능  © 민간 검사기관 + 지방청 시험분석센터 © 민간 + 민간 검사기관  ③ 지방청 시험분석센터

○ 민간 시험·검사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과 항목은 수입식품 정보마루 (수입식품 정보마루 > 알림자료 > 공지사항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#### ★ (적용 예시)

식품유형	최초정밀검사	민간 시험·검사기관				
भिक्षण	중점검사항목	Α	В	C	D	E
설탕	당도 사카린나트륨	0	0	0	0	당도 시험불가
기타설탕	납 이산화황	0	0	0	0	당도 시험불가
과당	과당 비선광도 사카린나트륨 납	0	0	0	비선광도 시험불가	비선광도 시험불가

	검사의뢰방법
	1. A, B, C, D 중 선택 의뢰
⇒	<ol> <li>E에 당도를 제외한 항목을 의뢰 하고 당도 검사는 A, B, C, D 중 선택 의뢰 가능</li> </ol>
	1. 비선광도 검사는 지방청으로 의뢰하고,
⇒	① 그 외 항목은 A, B, C중 선택 의뢰하거나, ② 모든 항목을 지방청으로 의뢰
	2. D 또는 E기관에 의뢰하는 경우, 비선광도는 A, B, C 중 선택의뢰



국민 **안심이 기준**입니다 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불역갈 안심기준

식품유형	최초정밀검사	민간 시험·검사기관				민간 시험			
भिक्षण	중점검사항 <del>목</del>	Α	В	С	D	E			
효소식품	조단백질 α-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총 아플라톡신	0		α-이밀모이제 프로테아제 시험불가			⇒		
벌꿀	물불용물 산도 전화당 지당 히드록시메틸푸르 푸랄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이성화당 탄소동위원소비율	탄소동위 원소비율 시험불가	원소비율	탄소동위 원소비율 시험불가	탄소동위 원소비율 시험불가	전화당, 자당, 히드록시메틸 푸르푸랄, 탄소동위원소 비율 시험불가	⇒		
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높여갈 안심기준				
방법				
로테아제는 ·고, 민간 시험·검사 뢰하거나, 방청으로 의뢰				
목 의뢰하거나,  제, 프로테아제  -머지 항목은  백 의뢰				
검사는 지방청 , C, D 중 선택 청으로 의뢰				

## Q 5.

#### 정밀 중점검사항목 이외에 위해정보 등 지시검사에 따른 추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, 어느 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해야 하나요?

- 위해정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가 상기 Q2에 따른 정밀검사의 중점 검사항목과 다른 경우,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사의뢰 가능합니다. (다만, 위해정보 등의 지시 검사항목이 정밀 중점검사항목과 동일한 경우 민간 시험·검사기관 의뢰)
  - ① 중점검사항목은 민간 검사기관으로,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는 지방청으로 각각 의뢰 (검체는 각각 수거)
    - \* 예) 지방청 시험분석센터 + 민간 검사기관 동시 의뢰 시 : 검체수 2개
- ② 지방청으로 전체 의뢰 (중점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납부 필요)
- ③ 민간 시험·검사기관으로 전체 의뢰 (단, 이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항목이 시험가능한지 확인 필요)



#### Q 6.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?

- 검사수수료는 각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지방청 시험분석센터로 의뢰되는 경우 관련 수수료 규정\*에 따라 부과됩니다.
- \*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 제2020-107호, 2020.11.2.)

#### Q 7. 수입 영업자의 비용 절감, 편익 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?

- 수입 수산물은 현재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제2.3.의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밀검사 및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향후 부적합 이력, 동시 다성분 분석 가능 여부, 위해정보 등을 고려하여 '중점검사항목\*'을 선정·운영할 계획이며, 수입축산물의 경우 감시항목은 지방식약청에서 검사할 계획입니다.
  - \* 수산물에 대한 중점검사항목 선정·운영 시 민간 검사의뢰 수수료 조정 기대
- 참고로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은 수출국 정부는 물론, 부처 간(수산물 품질관리원 등) 전자 수입위생증명 교환<sup>\*</sup> 확대, 수입 축산물 수입신고 처리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민원 편의 도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.
  - \* 종이 위생증명서 우편비용 및 시간 등의 절감으로 보관창고 비용 절감 및 빠른 물류 회전 등 기대